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23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 의 자 : 한병도 · 이광희 · 이재강
장철민 · 허 영 · 윤준병
이기현 · 양부남 · 송기현
강선우 · 안태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자료의 제공, 명단 공개 및 감치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 체납자 수는 665만 9천명에 달하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099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이 4,700만원이고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전체 명

단공개자의 52%에 이르고 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여 신용정보회사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체납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1조의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제공”을 “공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를 “경우”로,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채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절차”를 “공유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공받은”을 “공유받은”으로 한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을 “공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u>제공</u>)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u>경우로서</u>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u>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u>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 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u>공유</u>) ① ----- ----- ----- ----- <u>경우</u> ----- ----- ----- ----- ----- ----- ----- ----- ----- ----- ----- <u>「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 ----- -----

